

행정처분의 세부기준(제16조의2제2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,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 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.

나.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한다.

다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라. 다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(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마. 처분권자는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·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.

- 1)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 기준	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4차 이상 위반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	법 35조의4 제2항제1호	지정 취소			
나. 1년에 3회 이상 법 제 35조의4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35조의4 제2항제2호	업무 정지 1개월	업무 정지 3개월	업무 정지 6개월	지정 취소
다.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	법 35조의4 제2항제3호	업무 정지 1개월	업무 정지 3개월	업무 정지 6개월	지정 취소

라.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	법 제35조의4 제2항제4호	시정명령	업무 정지 1개월	업무 정지 3개월	업무 정지 6개월
---	--------------------	------	--------------	--------------	--------------